

만경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수 신 내부결재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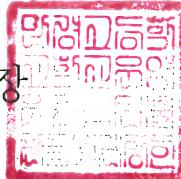
제 목 제24기 만경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1. 관련: 만경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0조
2. 만경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아래와 같이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만경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및 선거 흥보물 제작·배부하고자 합니다.
 - 가. 공고일: 2023.03.06.
 - 나. 입후보등록: 2023.03.07. ~ 2023.03.13. 16:30
 - 다. 선거공보: 2023.03.14. ~ 22.03.17. (4일간)
 - 라. 선거일(개표일): 2023.3.20. 13:00
 - 마. 흥보방법: 학교 홈페이지 게시

불임 1. 회의록(학부모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1부.

2.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1부.
3. 선거흥보문 1부. 끝.

만경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수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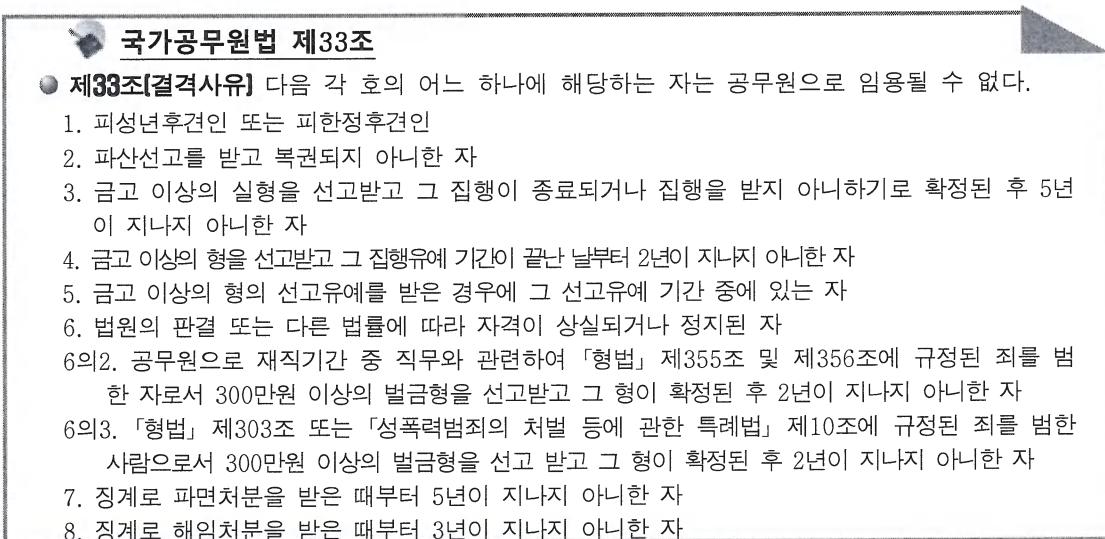
담당자 권승민 위원장 조수현
협조자
시 행 학부모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 1 (2023.3.6.) 접수
우 54307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능제로 29 /
전화 (063)542-5711 전송 (063)543-6077 / 공개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만경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만경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장소 : 만경고등학교 행정실

다. 기간 : 2023년 3월 7일 ~ 3월 13일까지(08:30~16:30)(토, 일요일 제외)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3년 3월 20일 (13:00~14:00)

나. 선거장소 : 만경고등학교 영어전용교실

다. 선거방법 : 직접투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4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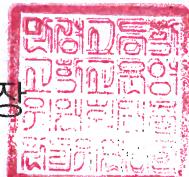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3년 3월 14일 ~ 3월 17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년 3월 6일

만경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안내장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학교에서는 제19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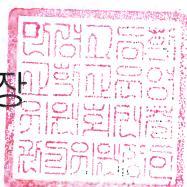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 등이며 학부모위원은 4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거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 등록기간 : 2023. 3. 7. ~ 3. 13.(5일간,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 입후보자격
 -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 선거공보 : 2023. 3. 14 ~ 3. 17 (4일간)
- ◇ 선거일 : 2023. 3. 20. 13:00
- ◇ 선거방법 : 직접투표

2023년 3월 6일

만경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선 거 홍 보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4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우리학교에서는 앞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출관리위원회구성[2023. 3. 6]

-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학부모 2명을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후보자 등록, 투·개표 등 선출업무 추진

선거공고[2023. 3. 6]

- 선거일시와 장소, 위원정수, 후보자 자격 등을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고

후보자 등록[2023. 3. 7~3. 13]

-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배부된 후보자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선거공보[2023. 3. 14~3. 17]

- 입후보한 후보자의 이력사항을 기록한 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학부모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투표실시[2023. 3. 20 (13:00)]

- 학부모님들이 학교(투표장)에 출석하여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직접투표

개표[2023. 3. 20 14:00]

- 투표 마감 후 개표(선출관리위원장 주관)
- 학부모 참관인이 임석한 가운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 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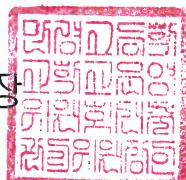
당선자 공고[2023. 3. 20]

- 다수 득표자 순으로 4명을 당선자로 결정하고 당선사실 공고

선거결과 홍보[2023. 3. 30]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으로 홍보

만경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제 1 차 만경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회 의 록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수현

2023년 3월 6일(월요일) 14:00

의사일정

1. 만경고등학교 학부모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2. 학부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세부 계획 수립
3. 학부모위원회 선출일정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 사 : 오늘 모임은 제24기 만경고등학교 학부모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장을 선출하고 학부모 위원 선출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먼저 위원장은 누가 맡아 주시면 좋겠습니까? - 홍수정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경력이 있으신 조수현 씨가 위원장을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 조수현 : 수락합니다. - 간 사 : 조수현씨께서 위원장직을 수락해주실 때 따라 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p>(위원장 선출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간사께서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간 사 : 학부모위원 선거일정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 즉, 3월 21일까지 선출해야 하며 선거일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p>업무추진에 여유를 가지려면 선거일정을 여유 있게 잡았으면 합니다.</p> <p>그리고 선거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안을 게재, 홍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자면 선출일정을 미리 확정하여 공고하여야만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운영위원 선출일이 3월 21일까지 이므로 3월 20일 월요일에 선출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정 : 이의 없습니다. (3월 20일로 선거일 확정) - 위원장 : 간사께서 미리 생각하고 계셨던 선거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간사 : 공고일(3.6), 입후보등록(3.7~3.13),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작성(3.14~17), 선거일(3.20. 13시)입니다. 금일부터 각종 홍보매체에 게재하여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간사께서 말씀하신 선거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 홍수정 : 이의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모든 선거일정은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정하고 3월 8일 화요일에 공고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p>- 기록자 : 남궁 미 <i>Udo</i></p>
---	--

문서번호	2023	작성일자	2023.03.06
처리과	교무실	행정실	공람
담당자		김성현	

학부모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세부 계획

1. (적용) 본 시행(안)은 만경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한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출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에 추진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시에 적용된다.
2. (위원의 구성)
 - 가. 학부모위원회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회 및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023년 3월 6일부터 위원선출 종료시까지로 한다.
 - 나. 선출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업무) 선출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선출공고 접수·확인·발송에 관한 사무
 - 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 다. 선거인 명부작성, 열람, 명부 확정
 - 라. 소견발표회의 관리 및 안내에 관한 사무
 - 마.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 바. 선거의 공보에 관한 사무
 - 사.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 아.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 자. 당선자 공고·통보에 관한 사무
4. (지원)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선출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교직원은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협조한다.
5. (선거사무의 분장) 선거사무 분장표는 붙임과 같다.
6. (선거방법) 투표방법은 (직접투표,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병행)으로 한다.
7. (후보자 등록)
 - 가. 후보자 등록 공고는 3월 6일 이전에 행하고 등록마감은 3월 13일 16:30까지로 한다.
 - 나. 후보자 등록은 입후보등록서 및 후보자등록대장에 의하여 등록되며, 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다.
 - 다. 후보자의 기호는 접수대장의 순서(또는 가나다 순, 추첨)에 의한다.
 - 라.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결격사유 조회를 함에 있어서 학교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www.share.go.kr)를 통한 결격 사유 유무를 조회하고, 결격(Y)이 나왔을 경우 입후보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하여야 한다.
 - 마.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확정한다.
8. (후보자 사퇴) 후보자의 사퇴는 서면에 의하여 선출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9. (선거인명부 작성)
 - 가. 학부모 선거인명부는 각 학급 담임이 작성하며, 정본,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각 1통 을 작성한다.
 - 나.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로 무투표당선 확정된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0. (선거인명부의 열람) 선거인명부는 『열람용』을 학교운영위원회실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학부모들의 명부 열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11. (선거인명부의 수정)

- 가.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선출관리위원회의 사인을 날인한다.
- 나.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으로 통보된 자 중 오기·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선출관리위원회는 통보를 받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하되 선출관리위원회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2. (명부의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5일 전에 확정하고 학교장에게 명부 확정 사실을 보고한다.

13. (선거공보) 선거의 공보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에 선거개시 5일 전 까지 각 선거권자에게 발송·게시한다.

14. (소견발표)

- 가. 소견발표는 선거일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실시한다.
- 나. 소견발표는 1인당 3분 이내의 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소견발표 순서는 입후보등록순서로 한다.

15. (투표소 설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투표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의 좌석
- 나.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 다. 투표함
- 라. 기표소
- 마.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16. (투표)

- 가. 투표방식은 기표제로 한다.
- 나. 학부모위원회는 우리학교 재학생의 모든 학부모에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부여하며, 가구당 1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 다. 투표용지에는 기호, 성명, 기표란, 관리번호, 위원장 사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라. 후보자가 사퇴, 사망, 등록무효 등 인 경우 그 시기가 후보등록 신청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 인쇄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 '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선거일에 의한 안내문을 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7. (투표일시) 투표일시는 2023년 3월 20일 (13:00~14:00)로 한다.

18. (투표의 진행)

- 가. 투표용지는 그 투표용지의 매수·관리번호 기타 인쇄상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그 투표용지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 투표개시 시각까지 보관한다.
- 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킨다.
- 다.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사인 날인란에 인영대장에 등록된 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19. (투표참관인)

- 가. 투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참관인을 지정하여 참관시킬 수 있다.
- 나. 참관인에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부하고 패용하여야 한다.

20. (투표참관과 질서유지)

- 가. 투표참관인은 투표참관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간섭·지연시키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투표참관인은 투표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출관리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1. (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 투표소에 출입하는 선출관리위원회위원·직원·투표사무원·투표 참관인의 표지는 왼쪽 가슴에 늘 잘 보이도록 달거나 붙여야 하며, 선출관리위원회위원·직원의 경우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22. (개표소의 설비) 선출관리위원회는 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23. (개표의 진행) 투표가 종료된 그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투표지를 다음의 개표 진행 부서로 넘긴 후로 한다.
24.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선출관리위원회장은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25. (개표 참관인)
가. 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 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내규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표에 관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출관리위원회장을 통해서 요구하여야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회장은 개표참관인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 등) 개표소에 출입하는 선출관리위원회위원, 직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의 표지는 왼쪽 가슴에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선출관리위원회위원, 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7. (투표용지 등의 보존)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에 관한 이의 제기가 되지 아니한 때는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이의 제기가 있은 경우는 그 결과가 종료된 때로부터 1월 이후에 선출관리위원회장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28. (운영위원회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선출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당선통지서를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하며, 학부모·교직원들에게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당선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29.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통지)
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수가 선출할 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사퇴 등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선거인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개시 시각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투표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업무분장표

구 분	업 무 내 용	담당자
선출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위원의 자격 • 선거일정 및 절차,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방법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관련 세칙 - 홍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 게시 	행정실
선출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공고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행정실
선거인 명부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방법 :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 작성부수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이 열람도록 함 	학급 담임
후보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위원회 입후보에 관한 사항(성명, 나이, 성별, 경력,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침물 등) -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행정실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용지 : 후보자의 기호, 성명, 기표란, 관리번호 기재, 위원장 사인 필요 - 투표장 : 투표순서, 기표방법,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행정실
투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절차 : 명부 확인·날인→투표용지 수령→기표→투입 	조수현 홍수정
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표시기 : 위원장이 투표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 - 개표주체 : 참관인이 입회하고 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실시 	조수현 홍수정
당선자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자확정 : 개표 결과 다수득표 순으로 학부모위원회 정수에 해당하는 자를 당선자 확정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행정실
선거결과 홍보	- 홍보방법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거홍보 동일한 방법으로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행정실